

2016

학회발전위원회

□ 일시 및 장소

- 2016년 3월 8일(화) 7시 30분
- 광화문 소재 달개비

□ 참석자

- 최승환, 박덕영, 김대원, 왕상한, 최원목(위임)

I. 학회발전위원회 성격 및 구성

< 2016년 1월 총회 결정사항 : 학회발전위원회 신설 >

○ 제안이유

- 학회기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 학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필요성 제시

○ 결정사항

- 학회발전위원회 신설 의결
- 위원회의 구성

* 위원장 : 직전 회장

위 원 : 전임 회장, 현 회장(간사)

○ 2016년 학회발전위원회 구성

- 위원 : 박노형, 최승환, 성재호, 이재형, 박덕영, 최원목, 김대원, 왕상한 (총 8인)

※ 정찬모 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였음.

- 위원장 선임

※ 정찬모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위원장직의 공백이 발생

※ 협의결과 직전 회장인 김대원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함

- 위원회의 운영
 - ※ 격월로 정례모임을 갖고 학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: 차기 회의는 5월 3일(화) 07:30 달개비에서 개최 예정임
 - ※ 차기 회의부터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읍저버로 참석하도록 함.

II. 기타 논의사항

○ 학회기금의 운영방안 논의

- 학회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.
- 동 위원회에서는 학회기금을 목적기금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음.

< 논의결과 >

- ※ 3월 25일 신진학자학술회의 개최일에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며, 안건으로 “현재 적립된 학회기금을 목적기금으로 지정” 하는 안건을 상정토록 함.
- ※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에 따라 목적기금의 용처(사무국 구입, 장학금, 학술상금 등)를 특정하여 결정토록 함.
- ※ 현재의 학회기금은 3년의 기간으로 적금에 가입토록 함.
- ※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, 5000만원 이하의 적립통장 1개와 나머지 잔액의 적립통장 1개로 분산하여 기금적립
- ※ 기금의 적금가입의 실무절차는 현 총무이사가 진행하며, 통장이관 받음과 동시에 이자가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.

○ 2016년도 WTO 모의재판대회 준비

- 위원위촉 현황 : 성재호(위원장), 김대원, 안덕근, 최승환
(이재민, 이재형, 최원목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

로 위촉을 사양함)

- 2016년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운영 및 위원위촉의 기본원칙 확인

- ※ 학회의 행사는 학회 외부의 조직이 아닌 학회의 공식 기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, 동 원칙에 따라 그동안 ‘외부’에서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학회 위원회 위원이 되어 ‘학회의 공식 기구’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람.

- ※ WTO 모의재판대회를 포함한 학회행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대학의 행사가 아니므로, 동일대학의 동일학과에서 2인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학교(단과대학)별 1인 참여의 원칙에 따라 진행

- ※ 위원회 위원 위촉, 행사준비 등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은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며, 학회집행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역할을 수행

- WTO 모의재판 위원회 위촉수락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박덕영 교수는 성재호 위원장과 의논 후 최종 회신하기로 하였음.

○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활동에서 학회간접비 비율

- 관례적으로 연구자 개인이 수주한 용역의 경우는 10%의 간접비, 학회차원에서 학회운영경비 지원 성격의 용역의 경우는 40%의 간접비를 책정한 전례가 있었음.

- ※ 연구용역의 간접비 비율은 당해 집행부의 재정운영 등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으로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다만 10% ~ 40% 비율 내에서 해당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것을 권함.